



제273회 정례회
2008. 7. 14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시립학교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-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08년 7월 7일

□ 제안 이유
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개정(2007.4.12.)으로 '실업계고등학교' 명칭이 "전문계고등학교"로 변경되고, 「특수교육진흥법」이 폐지(2007.5.25.) 되고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제정 시행(2008.5.26.)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목적 조항에 근거법령인 「사립학교법」 인용조항을 추가함.(안 제1조)
- 나. 「특수교육진흥법」이 폐지되고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(안 제2조제2호)
- 다.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변경(안 제4조제3호)

□ 검토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
 - 관련법령의 개정·폐지·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·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³⁾」이 2007년 4월 12일 개정에 따라
실업계고등학교 → 전문계고등학교로 명칭 변경

· 종전 적용법령인 「특수교육진흥법」이 2007년 5월 25일 폐지되고 종전의 법령을 보완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2007년 5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.

※ **제정법령 시행(공포후 1년후인 2008.5.26부터 시행)**

- 다만,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할시에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3)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부칙 <제20003호, 2007.4.12>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에 따른 "**실업계고등학교**"를 인용한 경우에는 "**전문계고등학교**"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